

[별표] <개정 2013.6.17>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4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
가.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1호	600	800	1,000
나.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1호	300	400	500
다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2호	400	600	1,000
라.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2호	200	300	500
마. 법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3호	200	300	500
바. 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3호	400	600	1,000
사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4호	300	400	500
아.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4호	400	600	1,000
자.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5호	400	600	1,000
차.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6호	400	600	1,000

카.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7호	400	600	1,000
타.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8호	600	800	1,000
파.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또는 부동산투자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5호	300	400	500
하. 법 제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·허가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9호	400	600	1,000
거.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6호	200	300	500
너.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10호	400	600	1,000
더.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7호	200	300	500
러.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·공시하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8호	200	300	500
머.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,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11호	600	800	1,000
버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9호	300	400	500
서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10호	200	300	500
어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12호	600	800	1,000
저.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	법 제54조제1항제13	600	800	1,000

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	호			
---------------	---	--	--	--